

도서출판등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1. 이옥선
2. 김군자
3. 김순옥
4. 유희남
5. 강일출
6. 정복수
7. 박옥선
8. 김외한
9. 김정분

채권자들 주소 경기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85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6층

담당변호사: 홍장미

(전화: 02-523-9995 휴대전화: 010-3285-****

팩스: 02-523-9905 이메일: yullaw@daum.net)

채 무 자

1. 박유하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2. 정종주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48-18

목적물의 가액 : 금 20,000,100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1. 명예훼손 도서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 등 등 금지청구권

2. 신청인과 신청인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한 접근 및 취재 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도서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A5, 148*210mm, 328쪽, ISBN 9788964620304)의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박유하는 신청인과 신청인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접근 및 취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들은 1931. 9. 18 만주사변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1945년 경까지 일본군이 군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각 점령지역에 설치된 군위안소에 사기, 협박, 납치 등의 방법에 의해 끌려와 군인들로부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여성들입니다.

피신청인 박유하는 현재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A5, 148*210mm, 328쪽, ISBN 9788964620304) (이하 '이 사건 도서'라고 합니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피신청인 정종주는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한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의 사업주입니다

2. 가처분 신청의 요지 및 목적

신청인들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 있는 군위안소로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하였으며, 전후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국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수요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료) 피해자 중 2014년 현재 단 55명만 생존하고 있어 매우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 박유하는 신청인들의 이러한 고통은 외면한 채, 2013. 8. 12.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A5, 148*210mm, 328쪽, ISBN 9788964620304) (이하 '이 사건 도서'라고 합니다.)를 출판하여, 신청인과 같은 '위안부'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은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한일간 역사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일간의 화해를 위해서는 '위안부'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피해자들은 일본군에 의해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존재와 그 피해사실은 UN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심지어 1993년 일본국도 고노담화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박유하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파

하여 대중을 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의 대표인 피신청인 정종주는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하여, 피신청인 박유하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박유하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신청인 정종주에게 민법 제76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목차	페이지	명예를 훼손한 표현	문제점
제1부-제1장-1.	19쪽 8줄	센다는 ‘위안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마치 일본을 위해 애국하는 존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1부-제1장-1.	19쪽 11줄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제1부-제1장-1.	23쪽 2줄	그 업자는 군인의 의뢰를 받고 위안부들을 모았다고 말한다.	업자의 인터뷰내용은 군이 오히려 개입했다는 증거로써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1부-제1장-1.	25쪽 3줄	증언자의 대다수가 이런 식의 유혹을 받고 집을 떠났다.	구체적 수치 제시 없는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제1부-제1장-2.	31쪽 19줄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외국에서 서러운 음지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그 역할은 자신에 대한 궁지가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을 위해 애국했던 존재라고 전제한 후, ‘위안부’로서의 역할이 일본군 ‘위안부’에게 삶의 궁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1부-제1장-2.	31쪽 21줄	“싱가포르 근처에는 거의 6000명의 가라유키상이 있었고 1년에 1000달러를 벌었는데, 그 돈을 일본인들이 빌려 상업을 했”(232쪽)다는 이야기는 해외의 가라유키상들이 일본 국가의 국민으로 당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해외의 가라유키상들은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개념인데, 마치 수입이 좋았다는 것으로 그들이 일본 국가의 국민으로 당

			<p>당할 수도 있었다고 단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좋았다는 부분 역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p>
제1부-제1장-2.	33쪽 7줄	<p>‘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p>	<p>일본군 ‘위안부’를 일본인 창기를 직접 비교하는 문장으로, 강제성이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의 성격을 무시한 표현입니다.</p>
제1부-제1장-2.	37쪽 19줄	<p>말하자면 아시아 각지에 존재했던 매춘시설이 모두 ‘일본군 위안소’였던 것은 아니다. 여러 종류의 ‘공창’과 ‘사창’이 존재했고, ‘일본군’이 관리하고 공식적으로 병사들이 이용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군이 허가한 ‘공창’뿐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중국 등 전쟁을 한 점령지에는 여성에 대한 ‘강간’도 많았지만, 이런 식의 ‘공창’에 있던 여성들도 있었다. 그렇게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여성들을 똑같이 ‘위안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p>	<p>강제로 공창에 가게 된 자들은 운이 좋으므로 ‘위안부’가 아니라는 것인가? 이 책 p36에서 저자는 민간인도 이용하는 위안소는 공창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끌려간 여인을 ‘위안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모순입니다.</p>
제1부-제1장-2.	38쪽 4줄	<p>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p>	<p>대다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p>
제1부-제1장-4.	48쪽 2줄	<p>‘정신대’동원과 ‘위안부’동원의 풍경은, 예외로 오비는 증언을 제외한다면(제외하는 이유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확연히 다르다.</p>	<p>증언의 주체가 정신대 동원에 의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다르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만 가지고 정신대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신대 동원의 풍경이 ‘가족들이 울었다’라고 묘사되는 점을 볼 때, 정신대는 ‘위안부’의 성격을 가짐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p>

			한 정신대가 전부 ‘위안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에 대한 인식이 그릇되었다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이는 저자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49 쪽 20줄에서의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의 표현 참조.)
제1부-제2장-1.	5 5 쪽 목차	1.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 지옥 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이러한 목차는 일본군과 ‘위안부’가 동지적 전우애가 있었다는 표현으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제1부-제2장-1.	57쪽 6 줄	‘주둔부대의 일원’이자 ‘부인같은 느낌’이었다는 위안부들. 사실은 이것이 조선인 위안부에게 요구된 역할이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군대에 투입되어, 회사에서 일하는 남성을 여성이 집에서 일하며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거기에 필요한 갖가지 보조작업을 하도록 동원된 것이 위안부였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쟁터에서의 강간의 대상이 된 ‘적의 여자’와 위안부는 군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다. ~~ 위안부들이 군인들과 휴일의 ‘평화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남편을 내조하는 주부에 비유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며, 일본군 ‘위안부’의 괴로웠던 시간들 중 일부분(휴일)을 평화로운 한때라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1부-제2장-1.	5 9 쪽 12줄	자원한 ‘위안부’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이 군인의 ‘위안’-‘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것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몸’이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해야 할 만큼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온 그녀들에게는, 군인을 상대하는 ‘위안부’란 처음으로 자신의 앞을 자리를 ‘양지’에 내 받은 일이기도 했다.	한 일본인 ‘위안부’의 한 증언을 토대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지만, 한 명의 증언이 곧 자원한 ‘위안부’들의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안부’ 제도 자체가 국가와 군대, 그리고 군인들의 잘못된 성관념과 폭력으

			로 만들어진 것으로, ‘위안부’들이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을 받게 된 이유도 거기에서 찾아야 함에도 오히려 양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표현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제1부-제2장-1.	6 1 쪽 18줄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궁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군인의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들이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안부’들이 자신의 역할에 궁지를 느꼈다는 표현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1부-제2장-1.	6 2 쪽 12줄	“응모했을 때로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업자의 증언으로써, 업자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제1부-제2장-1.	64쪽 8 줄	이 소설은 ‘위안부’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동할 수도 있었다는 것, 이동은 군인이 맡았다는 것, 군은 이들을 군부대가 주둔하는 ‘같은 시’ 다른 지역에 있는 ‘여관’이라 이름 붙은 위안소로 이동시켜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소설을 근거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허구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설의 내용을 사실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제1부-제2장-1.	6 5 쪽 11줄	가족과 고향을 떠나 떠나면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작가가 만들어낸 허상에 바탕한 것으로 명백히 허위의 사실입니다.
제1부-제2장-1.	66쪽 9 줄	이렇게 말하는 위안부는, “자꾸 배신감이 들어”라면서도 “지금도 이 사람이 안 잊혀져”라고 말한다.	이 증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군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없다. 본 장에서

			저자는 일본군 ‘위안부’들과 일본군인들 간에 사랑과 평화가 존재했음을 주장하기 위해 단편적인 증언들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부-제2장-1.	6 7 쪽 12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 중략 ...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일본군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은폐하려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1부-제2장-1.	68쪽 2 줄	말하자면 그녀들이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버리는 것은 그녀들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다. ‘문제’삼을 것으로 여겨진 ‘사회’의 억압이다. 그건 그녀의 기억들이 ‘피해자로서의 조선’에 균열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는 무의식적 양해사향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안소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기억들을 무화시키고 망각시키는 것은 그녀들에게 또 하나의 폭력이 아니었을까.	설사 저자의 말처럼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군과의 관계에 있어 일시적으로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감정이 위안소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둘은 별개의 문제이고 위안소에서 경험하였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단편적인 순간들에 의해 잊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폭력적입니다.
제1부-제2장-1.	6 8 쪽 13줄	“나뿐 군인은 말도 못 하게 나쁘지만 좋은 군인은 같이 울기도 하고 자기들도 천황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는 증언이야말로 위안소의 실태에 가장 가까운 것이리라. 그런데도 이 20년 동안 “어떤 군인은 달려들지 않고 짓통만 만지다가 가는 애들도 있었다.”는 기억은 그저 묻혀 있어야 했다.	위안소의 존재 자체에 강압과 폭력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모두를 피해자로 서술하는 저자의 저술은 전제를 무시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1부-제	7 2 쪽	앞서의 센다는 일본군이 위안부들의 권태	‘위안부’들이 운동회에서

2장-1.	14줄	<p>감을 풀어주기 위해 부대가 주관해서 운동화를 열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위안부들이 운동회를 몹시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 중략 ... ‘위안부’들의 순수한 기쁨의 기억을 외부자들이 소거할 권리는 없다.</p>	<p>기뻐했다는 센다의 말을 인용한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모습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p>
제1부-제2장-1.	73쪽 8 줄	<p>그러나 그런 일이 불가능했던 전쟁터에서 위안부는 대리고향이자 가족이었다. 그런 특공대의 마음을 받아주고 동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도 위안부들이었다. 그러나 피해기억만을 필요로 하는 한 “참 안됐”다고 말하는 연민의 기억은 잊혀질 수밖에 없다.</p>	<p>당시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는 명백히 억압, 폭력, 권력 관계에 있었는지 가족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계속해서 왜곡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안부’와 일본군이 대등한 동지 관계 혹은 가족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제1부-제2장-1.	74쪽 9 줄	<p>그렇다고 해서 “장교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일본 여자하고 조선 여자”이고 “현지 여자는 주로 병정들이 상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114쪽)한다는 식으로 계급화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가장 하위에 놓여 성과 생명을 국가에 바쳐야 했던 식민지의 ‘여성’과 병사들이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p>	<p>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과 일본 병사들을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입니다.</p>
제1부-제2장-1.	75쪽 6 줄	<p>여기에서 속아서 왔다면서도 “군인들이 총알 맞는 것”과 위안부가 된 것“을 그저 운이 나빴다는 식으로 간주하고 군인을 원망하지 않는 위안부가 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미 식민지가 된 지 오래인 땅에서 자라나 자신을 ‘일본’의 일원으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성은 어디까지나 동족으로서의 ‘군인’일 뿐 적국으로서의 ‘일본군’이 아니다. 그녀가 일본군을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불행한 ‘운’을 가진 ‘피해자’로 보면서 공감과 연민을 표할 수 있는 것도 그녀에게 그런 동지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p>	<p>피해자가 과거의 일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스스로를 일본의 일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일본인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일이라면 당시 겪었던 고통스러운 ‘위안부’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또한 전혀 개연성이 없는 작가의 억측입니다.</p>

<p>제1부-제2장-1.</p>	<p>76쪽 1 줄</p>	<p>혹독한 체험을 한 이들에게도 ‘즐거웠던’ 순간은 없지 않았고, 군인에게 신세타령을 하면서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위안부’도 없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에 의해 고향을 떠나 떠나면 타지로 이동해야 했던 ‘개미’ 같은 처지임을 서로 민감하게 감지한 고통한 남녀이기도 했다.</p>	<p>즐거웠고 정신적 교감을 나누었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당시의 생활이 상쇄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당시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갔다는 여지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적인 서술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에서도 일본군과 피해자들이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p>
<p>제1부-제2장-1.</p>	<p>77쪽 17 줄</p>	<p>군인들과 위안부들이 어울려 말이나 자동차에 타고는 “어른애들마냥” 놀았던 체험을 이 할머니는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한다.</p>	<p>증언자가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p>
<p>제1부-제2장-1.</p>	<p>79쪽 9 줄</p>	<p>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양쪽 다, 국민동원이라는 국가 시스템 속에서 함께 움직여진 장기말이었다. 그들은 둘 다 성과 생명을, 그것을 담는 신체를 ‘국가를 위해’ 바쳐야 했던 한 마리 ‘개미’들이었다. ... 중략 ... 그들은 함께 국가에 의해 고향을 멀리 떠나 타지로 ‘이동’해야 했던 이들도 했다.</p>	<p>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갔다는 것으로 비추어 지기 쉬운 명예훼손적인 서술을 하고 있고, 당시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쳤다는 서술 역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p>
<p>제1부-제3장-1.</p>	<p>95쪽 9 줄</p>	<p>그녀에게는 위안부 체험보다도 귀환 체험이 더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p>	<p>증언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p>
<p>제1부-제3장-1.</p>	<p>98쪽 1 줄</p>	<p>중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인들에게는 ‘적’의 관계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중엔 스스로가 위안소를 경영하는 업자가 된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일본의 패전이란 우선 그동안의 자신의 위치</p>	<p>조선인 ‘위안부’들도 ‘위안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적의 ‘위안부’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가해자의 역할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안</p>

		<p>와 재산을 잃는 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었어도 ‘간호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일본군과 함께 쉽게 빠져나온 경우도 있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한 것은 일본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돈을 벌었던 경우에도 이들은 모든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건 그들이 일본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결과로 일본과 함께 현지에서 쫓겨 달아나야 했던 ‘준일본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안부의 가난’은 업주들에게 노예 같은 착취를 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패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식민지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일본인과 조선인 등 ‘일본 제국’의 구성원들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패전을 맞아 대부분 몸만 빠져나와야 했고, 돌아온 각각의 ‘조국’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이(일본인, 대만인과 함께) ‘조선인 위안부’가 중국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다.</p>	<p>부’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의 문제가 아닌 평가의 문제인데 견해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판시에 따를 때 명예훼손적 서술에 해당합니다.</p>
<p>제1부-제 3장-1.</p>	<p>99쪽 5 줄</p>	<p>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p>	<p>이 문장을 통해, 저자는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전쟁을 수행한 일본군인과 동일하다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p>
<p>제1부-제 3장-2.</p>	<p>101쪽 21줄</p>	<p>어쩌면 그들의 ‘죽음’은 ‘일본인’에게만 허용된 의무이자 공지의 표현이었을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확인되는 한 일본군이 패전 직후 조선인 위안부를 무조건 사살했다는 이야기를 보편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신을 ‘일본인’으로 믿었던 일부 조선인이 일본군처럼 자결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안부의</p>	<p>위 서술은 굉장히 황성 수설하고 한 번만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데, 이런 식의 서술 방식의 본 책에서 자주 등장하며 이러한 서술을 통해 당시 존재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습</p>

		죽음'으로 알려진 사진은 폭격에 의한 것이거나 '일본인 위안부'일 가능성이 높다.	니다.
제1부-제3장-2.	102 쪽 14줄	전쟁터의 극한상황에서 군인이 조선인 위안부를 버리고 갔다 해도, 그 또한 대상이 '조선인'이어서라기보다는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에고이즘'이거나 '위안부'집단보다는 '군인'집단을 더 우위에 둔 차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저자는 앞서 군인과 '위안부'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서술해 놓고 다시 말을 바꾸어 군인 집단을 더 우위에 둔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저자가 얼마나 일관되지 못한 서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1부-제3장-2.	103 쪽 20줄	실제로 위안부들이 얼마나 귀환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난 이들의 숫자가 적은 것은 올 앞에 나타나야 할 만큼 피해가 컸던 이들인 게 아닐까. 다들 이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신은 어렸다는 이야기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이가 많으면 피해가 적고 어리면 피해가 컸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작가의 왜곡된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를 당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가 큰 사람들은 앞에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저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동 문제 해결 상황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본 책을 집필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제1부-제3장-2.	104 쪽 5줄	아마도 지금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들이 아닐까.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일본군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다 생명을 잃은 이들 - 말없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일본이 사죄해야 하는 대상도 어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당한 피해를 '국가를 위해'바친 것, 그리고 피해자들을 '제국의 위안부'라고 표현한 것은 명

		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틀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언어와 이름을 잃은 채로 성과 생명을 '국가'를 위해'바쳐야 했던 조선의 여성들, '제국의 위안부'들에게.	백히 허위 사실로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부-제1장-2.	111 쪽 15줄	'조선인 여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반도 출신 일본 여성-제국 치하 국민의 자격으로 군인에 대한 성의 제공을 요구당한 존재였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정대협은 '차이', 다른 지역 여성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배제하고 똑같은 피해자로만 설명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이 일본 제국의 국민이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한 사고방식은 일본군 '위안부' 및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일병탄은 무효라는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2부-제1장-2.	111 쪽 18줄	위안부에 '조선 여성'이 많았던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선은 '조선'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제2부-제1장-2.	112 쪽 1줄	예외는 있었겠지만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갖고 일본군을 상대했다는 사실은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2부-제1장-2.	112 쪽 15줄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될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가난하여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저자는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의 개입과 책임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부-제1장-2.	112 쪽 21줄	위안부 중에 조선인 여성이 많았던 것은 식민지의 빈곤과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 등 전체 사회구조의 결과이다.	
제2부-제1장-2.	113 쪽 2줄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위안부들은 폭격으로 사망한 이들이 오히려 소수이고 대부분은 귀국했거나 현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중에 일본군의 도움으로 귀국한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도 정대협의 설명은 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수치 등의 근거 없이, '소수', '대부분'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정대협의 입장을 왜곡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2부-제1장-2.	115 쪽 11줄	하지만 정신대를 위안부로 혼동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처럼, 정대협은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바꾸거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일본군위안부, 중군위안부, 정신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

		나 전시내용을 조금 바꾸었을 뿐이다.	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general/general.nx?page_str_menu=040701 참조)
제2부-제1장-3.	116 쪽 15줄	예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포주들은 위안부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갈취했고, 일하기 싫거나 아플 때도 성노동을 강요했다.	예외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피해를 받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이 있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주는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2부-제1장-4.	118 쪽 15줄	미봉책'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박물관'인 이상 미봉책의 내용이나 상당수의 위안부들이 보상금을 받았다고 사실도 말해야 옳다.	보상금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는 62명인데 이를 '상당수의 위안부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2부-제1장-4.	120 쪽 19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매춘이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매춘이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입니다.
제2부-제1장-5.	121 쪽 16줄	돌아오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돌아왔다고'고 한다면, 그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함과 조금은 다른 상황으로 자신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일본군 '위안부'의 생각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2부-제1장-5.	121 쪽 21줄	거의 10년 전 일이지만, 위안부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혼자 나와 사는 '위안부'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개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는데, 나눔의 집이 싫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착오로 일본 군인과 헤어지게 된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증언에 대한 구체적 출처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눔의 집을 싫어하는 이유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군인과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마치 '소거'된다

			고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제2부-제3장	128 쪽 2줄	우선 그녀는 자신이 '좋은 집안'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내용의 실제 주인공인 故 정서운 할머니는 자신이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며 자신을 다른 '위안부'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자는 '자칭'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故 정서운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로 된 계기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자칭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제2부-제3장	129 쪽 4줄	그리고 소녀를 보낸 직접적인 주체가 마을 사람-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는 하지만, 증언에 나오는 이야기-소녀가 '자칭'했다는 사실은 사용되지 않는다.	군인과 함께 아편을 사용하는 경우에 아무런 근거 없이 아편 사용의 이유를 성적 쾌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2부-제3장	130 쪽 17줄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저자는 책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故 정서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밀수에 대한 구체적 증거 또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2부-제3장	130 쪽 21줄	물론 이 위안부가 해방 후에 '밀수'로 생활을 했다는 것도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야기 되지 않는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성노예라는 단어를 꺼려하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픈 기억을 단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2부-제3장	131 쪽 4줄	2012년에 '위안부'대신 '성노예'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당사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성노예를 자신의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
제2부-제3장	134 쪽	그러나, 70세가 되어가도록 그 이전의 자	

3장	13줄	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면, 그건 과거의 상처가 깊어서라기보다는 상처를 직시하고 넘어서는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표현입니다.
제2부-제4장-1.	137 쪽 3줄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위안부’를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라고 하여, 피해자인 ‘위안부’를 가해자의 지위로 보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 ‘간호부’란 표현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제2부-제4장-1.	137 쪽 6줄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제2부-제4장-1.	138 쪽 6줄	그녀들은 전시에 이미 간호부로 일하고 있었다.	
제2부-제4장-2.	140 쪽 2줄	다시 말해 ‘위안부’제도는 근대 이후의 정치적인 면이 아니라 근세 이후 일본의 문화적 전통과 근대 이후의 여성들의 생계형 ‘이동’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했다.	이동은 강제성을 배제한 개념을 배제한 단어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악의적 사용으로 마치 일본군 ‘위안부’가 생계의 이유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군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제2부-제5장-1.	145 쪽 14줄	‘위안부’들은 이렇게 ‘무상’노동도 강요당했다.	이 문장은 소설 「메뚜기」의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간을 당하는 것인데, ‘무상’노동이란 표현은 사용하여 ‘위안부’를 노동자로 호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2부-제5장-4.	158 쪽 7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원해서 갔다는 식의 의견을 사실을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2부-제5장-4.	160 쪽 10줄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의 내심의 의사를 애국심의 발로라고 포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2부-제	160 쪽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	

5장-4.	18줄	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금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제3부-제1장-2.	173 쪽 18줄	그리고 “매일 3,4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수십 명’과는 많이 다르다.	조선인 ‘위안부’이 매일 수십 명이 아닌 3,4명의 군인을 상대했다고 하여 그 피해와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위안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3부-제1장-2.	175쪽	고노 담화에 대한 해석 부분	군의 직접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잘못된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3부-제1장-3.	178 쪽 6줄	‘정부’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금’이었다. 다시 말해 ‘기금’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가 기금 조성에 주도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 기금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논리성이 결여된 주장입니다.
제3부-제1장-5.	184 쪽 11줄	그런데, 같은 광고에서 재일교포 송신도 할머니는 “위로금(見舞金)을 받으면 주위 일본 사람들이 경멸한다”고 말한다. - 이하 송신도 할머니의 발언에 대한 저자의 의견	송신도 할머니의 발언을 ‘조선인으로서의 금지’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는 등, 주관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3부-제1장-5.	184 쪽 22줄	E 그들이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실은 ‘사회와 보상’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1965년의 한일협정을 통해 ‘법적 책임’은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일협정의 성격을 오해시키는 부분입니다.
제3부-제1장-6.	191 쪽 8줄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민간인의 책임으로 회피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제3부-제3장-1.	207쪽 3줄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하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는 명백히 강제로(넓은 의미이든 좁은 의미이든 강제성이 범죄임에는 틀림없다.)에 의해 자신의 성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체를 유린당하였는데, 피해자들을 일본군에 ‘협력’한 ‘동지’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3부-제3장-1.	207쪽 10줄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다.	저자는 ‘위안부’가 노예이면서 동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가 봐도 그 자체로 모순인 언어조합입니다. 노예는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하층계급을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전제한 것이므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노예’로 표현한 것 자체도 피해자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 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제3부-제3장-1.	208쪽 1줄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동지이자 협력자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3 부 - 제3장-2.	217 쪽 9줄	시스템이 비인륜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시스템을 만든 주체가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위안부’ 모집행위를 사인이 했다 하더라도, 일본군이 나서서 ‘위안부’ 제도를 고안하고 모집을 독려·방치했다면, 이는 형법상 교사·방조죄로서 정범과 똑같은 죄질을 갖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제 3 부 - 제 3 장 -2.	217쪽 14줄	다시 말해 국가로서의 발상과 기획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위안부의 고통이 물리적으로는 업주나 군인에 의한 것인 이상 군인들의 이용을 국가범죄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범죄자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다 할 것입니다.
제3부-제 3장-2.	219 쪽 16줄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은 전리품이었다.	점령지의 피해 여성을 전리품이라고 표현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도 문제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를 군수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훨씬 충격적입니다. 이는 여성의 성을 객체화시키고 상품화시키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10조의 인간의 존엄에 명백하게 반하는 표현행위입니다. 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

			<p>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21조 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내재적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물건으로 비유하는 것, 특히 전쟁피해자들을 군수품이나 전리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p> <p>→ 강간과 학대 등의 피해자인 ‘위안부’를 군수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가 ‘물건’으로써 일본군의 침략행위에 ‘협력’했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의 성적 도구로 폄하하고 이것을 피해가 아니라 가해행위의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것입니다.</p> <p>특히 ‘위안부’ 피해자가 일제의 침략전쟁행위에 협력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들을 반민족행위자, 친일파로 낙인찍는 행위입니다. 과거 식민</p>
--	--	--	---

			지국가로서 커다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한국에서 특정인을 근거 없이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3부-제3장-3.	232 쪽 6줄	서글픈 사실이지만, 그 조약이 양국 합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 그 조약에 의거해 이루어진 법적으로 일본인이 되어야 했던 조선인으로서의 피해는 보상의 근거가 없다는 말이 된다.	을사늑약을 합의에 의한 조약으로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사늑약은 강박에 의한 조약체결로서 국제법상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으로서 우리의 사회윤리에 명백히 어긋나므로 위에서 언급했던 헌법 21조 4항의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표현행위로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3부-제4장-1.	246 쪽 1줄	그런데 증언 가운데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북한 여성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우연일까.	무책임한 의문제기로 증언의 신빙성 공격, 북한 여성들의 증언이라는 것이 신빙성을 저해할 요인도 아니거니와, 현재 한국 여성들도 끔찍한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3부-제4장-1.	246 쪽 7줄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가 ‘매춘’을 한 여성인 것과 같은 표현하여,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장입니다.
제3부-제5장-1.	263 쪽 3줄	또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한일합방 이 일본의 국민이 되겠다고 한 약속이었던 이상 ‘일안부’동원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저자의 친일본(친식민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3부-제	265 쪽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	피해자를 동지로 표현하

5장-2.	2줄	의 동지적 관계였다.	는 것은 피해자에게 있어서의 끔찍한 명예훼손입니다. 더불어 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닌 침략당한 피해자 국가 전체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제3부-제5장-2.	265쪽 19줄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제4부-제1장-3.	288쪽 5줄	가난한 자원병들은, 처음부터 신체 자체, 생명 자체를 국가에 저당잡힌 존재들이기도 하다.	‘위안부’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팔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4부-제1장-3.	288쪽 12줄	일본의 패전 직후나 한국전쟁 때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디에든 반복될 수 있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입니다.
제4부-제2장-1.	291쪽 6줄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위안부’ 문제를 매춘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제4부-제2장-1.	291쪽 10줄	(업자나 위안부 자신이 선택했을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4부-제2장-1.	291쪽 11줄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가 전체 위안부의 ‘대부분’이라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정확한 근거 없이 주장을 하면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제4부-제2장-1.	291쪽 23줄	군이나 경관에 의한 ‘강제연행’은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오히려 극소수이다.	
제4부-제2장-1.	292쪽 2줄	이들은 본인이 하지 않았어도 중간업자에 의해 이미 포주와의 계약관계에 있었고, 그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당했다.	
제4부-제2장-1.	294쪽 5줄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가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4부-제2장-1.	294쪽 16줄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렀던 것은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제4부-제	294쪽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	

2장-1.	22줄	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제 4부-제 2장-1.	295 쪽 7줄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이 직접 ‘강제적 끌어간’ 존재이고 그들을 ‘감금’한 것도 일본군이고 모든 군인은 포악하고 모든 위안부는 ‘순진한 어린소녀’로만 간주하는 일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안부(이른바 ‘매춘부’를 포함)들을 배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위안부’ 피해자 중 매춘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개념을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제 4부-제 2장-1.	295 쪽 10줄	그것은 우리의 피해자성을 희석시키고 싶지 않은 피해자로서의 욕망이 시키는 일이지만, 표면적인 모습이 ‘완벽한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들 역시 피해자이고 희생자였다.	
제 4부-제 2장-1.	296 쪽 19줄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활동이 잘못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 4부-제 2장-1.	296 쪽 22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던 그 시간들은 ‘한국인 위안부’와 다른 나라 ‘위안부’와의 차이를 소거해 버린 시간이기도 했다.	다른 나라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를 구별해서, 한국인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소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4부-제 2장-1.	298 쪽 5줄	문제는 네덜란드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 역시 ‘적’의 관계였다는 점이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의 가해자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4부-제 2장-2.	300 쪽 18줄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정대협이 운동은 ‘여성의 인권 문제’를 기치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명백히 논점을 흐리는 표현입니다.
제 4부-제 2장-2.	301 쪽 4줄	그것은 일본의 진보가 꿈꾸었던 ‘일본 사회의 개혁’과 통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정대협의 운동도 ‘위안부 문제 해결’ 보다 ‘진보’가 세상을 바꾸는 정치적인 문제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정대협의 활동 내용을 마치 정치적, 특히 진보, 좌파라고 평가하여 폄훼하고 있습니다.
제 4부-제 2장-2.	301 쪽 22줄	정대협의 북한과의 연대는 ‘민족’으로서의 연대라기보다는 실은 ‘좌파’로서의 연대였다.	
제 4부-제 2장-2.	306 쪽 10줄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에 협력한 것으로 표현하고, 소녀상을 폄훼하

		겨낸 소녀상을 토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뿐이다.	고 있습니다.
제4부-제2장-2.	306 쪽 20줄	그녀들은 ‘이동’에 의해 경제력을 갖춘 주체로 재주체화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경제 활동을 위해 스스로 참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4부-제2장-2.	307 쪽 14줄	“남자군에 기생하는 행태로 일본인의 상업 활동이 형성되고/되어, 발전을 이루었”고 그중에서도 “기모노집, 일상잡화집, 여관업, 의사, 그리고 사진업, 세탁소 등, 모두 남자군의 변영에 ‘기생’하는 형태로 발생한”(야노 도루, 43쪽)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상권이 머지않아 타국의 토지와 제도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제국주의였다는 점에서, 남자군들은 무의식적인 제국주의자들이기도 했다.	일본군‘위안부’의 출현이 상권을 발달시키고 제국주의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4부-제2장-3.	308 쪽 17줄	최근 들어 그 중에는 전부가 조선인은 아니었다는 인식도 내놓고 있지만, 정대협이 인식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말하고 수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스스로의 주장을 바탕으로 말을 하면서 정대협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4부-제2장-3.	308 쪽 19줄	2013년 1월에 이루어진 뉴욕 주 상원 결의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4부-제2장-3.	310 쪽 3줄	전대협은 ‘아시아’의 ‘위안소’가 똑같이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간’곳으로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겠지만, 당시에 싱가포르에 가 있었던 조선인 여성은 ‘일본 제국’의 일원이었다...태평양전쟁 때의 조선인이란 ‘일본인’이고 자국을 침략한 적국의 여성일 뿐이었다.	
제4부-제2장-3.	310 쪽 16줄	조선부 위안부들은 일본인 위안부들에게 차별을 당했지만, 낌새난다는 이유로 대만인을 싫어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을 채, 조선인 ‘위안부’에게 다른 나라의 여성을 차별하는 존재의 이미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제4부-제2장-3.	310 쪽 22줄	‘위안부’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한국이 바라는 방식으로 ‘기림’을 받기에는 모순이 없지 않은 존재	

		다.	
제4부-제2장-3.	311 쪽 4줄	한국의 욕망이 투영된 ‘피해자이자 투사’로서의 ‘민족의 딸’을 보는 일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적의 여자’이기도 했던 일을 잇는 일이기도 하다.	
제4부-제2장-3.	312 쪽 7줄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인 위안부도 많다.	
후기	319 쪽 17줄	그러나 위안부 지원(위안부들은 정부의 ‘인정급’과 생활지원을 받고 있어서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한다), 박물관 건립 등 그동안 이어져 온 ‘모금’과 ‘기부’운동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위안부’ 지원활동(일본의 배상과 사과를 촉구하는 활동 포함)의 필요성을 격화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지원 활동은 일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관심과 도움을 주는 일본인과는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오히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후기	320 쪽 2줄	정대협이 ‘운동’을 거대한 ‘국가적 소모’라고까지 느끼는 내 감성을 그저 ‘천일파’로 간주하려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정대협이 이룩한 성과는 무시하면서, 정대협 활동 전체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침해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이 사건 도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출판물에 실린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글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글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글의 주제 및 게재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서에서 사용된 표현의 내용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이 사건 도서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피신청인들의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

가) '위안부는 모집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한 매춘을 한 것이다.'

피신청인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성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매춘을 하였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위안부가 매춘을 했다는 명제는 입증 가능한 것이므로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해당합니다.

설사 위와 같은 표현들이 의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안부가 매춘을 했다는 사실을 전제한 표현이고 독자는 반복적인 주입을 통해 위안부가 매춘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받게 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33쪽 7줄)
-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될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112쪽 15줄)
-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120쪽 19줄)
- 말하자면 아시아 각지에 존재했던 매춘시설이 모두 ‘일본군 위안소’였던 것은 아니다. 여러 종류의 ‘공창’과 ‘사창’이 존재했고, ‘일본군’이 관리하고 공식적으로 병사들이 이용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군이 허가한 ‘공창’뿐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중국 등 전쟁을 한 점령지에는 여성에 대한 ‘강간’도 많았지만, 이런 식의 ‘공창’에 있던 여성들도 있었다. 그렇게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여성들을 똑같이 ‘위안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37쪽 19줄)
-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46쪽 7줄)
-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291쪽 6줄)
- (업자나 위안부 자신이 선택했을 수도 있다.) (291쪽 10줄)
-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이 직접 ‘강제적 끌어간’ 존재이고 그들을 ‘감금’한 것도 일본군이고 모든 군인은 포악하고 모든 위안부는 ‘순진한 어린소녀’로만 간주하는 일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안부(이른바 ‘매춘부’를 포함)들을 배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295쪽 7줄)
-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296쪽 19줄)
- 2012년에 ‘위안부’대신 ‘성노예’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당사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성노예를 자신의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31쪽 4줄)
- 그러나, 70세가 되어가도록 그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면, 그건 과거의 상처가 깊어서라기보다는 상처를 직시하고 넘어서는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134쪽 13줄)

나) ‘위안부는 일본군의 동지이자 협력자이다.’

피신청인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의 협

력자이자 동지였고, 일본 제국에 애국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는 일본군에 협력하거나 일본제국에 애국한 동지가 아니며, 이는 증명 가능한 문제로써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 지옥 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55쪽 목차)
-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137쪽 3줄)
-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37쪽 6줄)
- 센다는 ‘위안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19쪽 8줄)
-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19쪽 11줄)
-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99쪽 5줄)
-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 (160쪽 10줄)
-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궁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160쪽 18줄)
-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207쪽 3줄)
-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207쪽 10줄)
-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208쪽 1줄)
-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265쪽 2줄)
-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265쪽 19줄)
-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294쪽 5줄)
-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

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2쪽 12줄)

-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외국에서 서러운 음지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그 역할은 자신에 대한 긍지가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수 있다. (31쪽 19줄)
- 혹독한 체험을 한 이들에게도 ‘즐거웠던’순간은 없지 않았고, 군인에게 신세타령을 하면서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위안부’도 없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에 의해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지로 이동해야 했던 ‘개미’같은 처지임을 서로 민감하게 감지한 고독한 남녀이기도 했다. (76쪽 1줄)
- 앞서의 센다는 일본군이 위안부들의 권태감을 풀어주기 위해 부대가 주관해서 운동화를 열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위안부들이 운동회를 몹시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 중략 … ‘위안부’들의 순수한 기쁨의 기억을 외부자들이 소거할 권리는 없다. (72쪽 14줄)

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1)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신청인 박유하는 특정 개인이 아닌 ‘위안부’ 전체 대한 명예훼손,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피신청인 박유하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대상인 ‘위안부’피해자는 그 구성원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의 피해를 기준으로 한 피해자 집단이므로 그 구성원이 변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

다. 그러므로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피해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피신청인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서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성을 제공한 매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허위사실이지만, 허위 여부를 떠나서 특정한 사람들이 매춘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는 이미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피해자들을 일본군의 협력자, 동지,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군은 전쟁범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부'피해자를 일본군의 협력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청인들을 전쟁범죄에 가담한 자로 매도하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

1)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①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②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판례에 의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따라서 피신청인 박유하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겠습니다.

2) 진실한 사실이 아님

가)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 여성들은 당시 강제¹⁾로 일본군 ‘위안부’가 된 것이지,

1) 여기서의 강제는 좁은 의미의 강제와 넓은 의미의 강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발적으로 매춘행위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일본 군인들의 증언과 기록, 외국의 공문서의 기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 피해 여성들의 증언

필리핀의 마리오 로사 루나 헨슨의 위안부 피해에 대한 증언과 중국인 위안부들이 일본에서 세 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일본법원에서 일본군에 의한 감금·강간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사실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당시 위안부들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본 군인에 의한 증언과 기록

- a. 당시 대위였던 나가사와 겐이치는 여성의 성병검사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위법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 b. 중국 군의가 중국에서 여성을 군위안부로 만들기 위해 성병검사를 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부터도 군에 의해 위안부가 설치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 c. 주계장교였던 사카베 야스마사는 인도네시아 암본섬에서 있었던 강제연행과 강제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외국 공문서의 강제성 기술

- a.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 자료인 '일본인 포로 심문 보고' 49호에는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들을 유괴와 인신매매로 끌고 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b. 극동국제군사재판 증거자료와 판결에도 일본 육군 중위가 여성들을 유괴하여 위안부피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c. 이 외에도 네덜란드 정부가 조사·공표한 문서들로부터 당시 위안부 여성들이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령 동인도 스마랑에 강제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1994년 네덜란드 정부 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 외에도 8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 (4) 당시 한국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부가 되는 것에 대해 육군과 내무성이 '엄중하게 단속'하지 않았다. 위안부 모집 시 군이 통제하고 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관련 지역의 헌병·경찰과 긴밀하게 연계하였습니다.

나) 위안부는 비참한 대우를 받은 성노예였고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피신청인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서 '위안부'가 공창제도의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창제도 아래에 있던 여성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속아서 따라갔거나 인신매매에 의해 끌려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신청인 박유하는 '위안부'로서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하지만, 많은 '위안부'피해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생생

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가 사실상의 성노예 제도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① 1924년 1월 와세다대학 교수 아베 이소오 등이 제출한 「공창제도 폐지 청원서」는 “공창제도는 사실상 전율스런 인신매매와 참담한 노예제도를 동반한 벗어날 수 없는 나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② 1930년 12월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는 “공창제도는 인신매매와 자유구속이라는 2대 죄악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상의 노예제도”라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박유하는 '위안부'가 매춘업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안부'의 수입이 좋았다고 표현하지만, 결코 '위안부'의 수입이 좋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의 실제 수입은 보통 1개월에 600-750엔이었습니다. 당시 육군 대장의 연봉은 6,600엔이므로 액면가는 '위안부'의 연봉이 더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쟁지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전쟁지와 일본 국내의 통화거래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의 수입을 액면 그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기존 통화가 아니라 군표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도 액면가대로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을 일본군에게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것이지, 그로 인하여 얼마의 대가를 받았는지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간범이 강간 후 피해여성에게 돈을 주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3)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피신청인 박유하의 표현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객관적인 조사에 근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증언만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전체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대표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로서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훨씬 많으며, 이는 일본 법원에서도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료도 아닌 소설을 통해서 '위안부'가 행복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사람으로

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즉 피신청인 박유하는 '위안부'가 고통을 겪었다는 수많은 증언들은 모두 무시한 채 일부의 증언, 일부의 소설, 빈약한 역사적 사료들을 근거로 '위안부'피해자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군의 협력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4)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

판례에 의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피신청인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에서 겉으로는 일본과의 화해를 내세우고 있어 마치 자신이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일방

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골고루 고려된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민지배 문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의 전쟁범죄, 대량학살범죄, 노동력 착취, 인권유린행위 등을 사과하고 보상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박유하는 식민지시대 일본제국으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을 피해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인 매춘이자 침략범죄의 공범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만 반영된 것으로서,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화해의 방식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인 일본이 자신의 구체적인 가해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화해방식이 아니라, 국제사회도 공감하는 화해와 갈등해결의 방식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일본이 '위안부'문제를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해결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은 2007년 하원에서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제로 강제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일 것과 피해자에게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수탈 및 인권유린행위가 당시에는 적법했다든지, 피해자들은 제국의 일원으로서 전쟁범죄에 가담했다든지 하면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공공

의 이익에 부합하는 화해의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가해자의 일방적·강압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미쓰비시강제징용 판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에서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일본의 판례는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민법 103조에 위반하므로 우리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 박유하의 기술은 진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습니다.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그러나 학문연구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 등을 통하여 발표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76482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이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표현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21조 제4항)와 학문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37조 제2항)도 넘어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 피신청인 정종주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피신청인 정종주는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도서를 제작, 배포, 판매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박유하의 명예훼손에 가담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신청인 정종주는 이 사건 도서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박유하의 명예훼손적 표현은 피신청인 정종주의 출판행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정종주의 출판행위와 피신청인 박유하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신청인 정종주는 이 사건 도서로 인한 신청인들의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 소결

신청인들은 이러한 피신청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들은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보전의 필요성

가. 명예권 침해의 중대성

피신청인 박유하는 자신의 도서인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3.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신청인들의 명예 및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성적 노예로 고통 받아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방기한 채, 객관적인 시각에서 「위안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억과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출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증언과 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성을 제공한 매춘부’, ‘일본군의 협력자, 동지,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자’로 매도하여, 일본정부의 사죄를 받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함께 일본정부의 사죄를 위해 노력했었던 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인이 된 현 상황에서, 자신들도 일본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 신청인들이

많은 상처는 감히 표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

「제국의 위안부」의 저술 목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사고의 틀에 갇혀,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은 외면하고 일본의 잘못만을 강조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화해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피신청인 박유하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저술 목적의 기저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접근 방식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위안부 문제에 우호적이었던 일본 국민이 이러한 한국의 태도로 인해 반한 감정이 생기고, 우경화되었다는 피신청인 박유하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적 자료와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과 일본제국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감독과 지시 아래에서 발생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피신청인 박유하는 이를 간과하고, 오히려 한국의 인식과 접근방식이 잘못되어 일본의 화해의 손길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의 난해함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을 역사적 사실로 포장하여 한국 사회에 유포하는 것으로, 그 폐해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추가적 침해 발생의 위험성 - 피신청인 박유하의 언론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침해활동

피신청인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 출판 이후, 이를 토대로 일본에서 대학 강연을 하거나 한국에서 심포지엄을 여는 등 잘못된 인식 및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3년 8월 26일에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채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책임은 인신매매 업자에 먼저 물었어야 했다”는 주장을 하였고²⁾, 2013년 10월 6일에는 「제국의 위안부」 서평회를 통하여 자신을 주장을 공론화 시켰으며³⁾, 2014년 4월 11일에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이 사건 도서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발표하였습니다⁴⁾. 최근에는 2014년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제3의 목소리’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 “출발치고는 괜찮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암시하였습니다⁵⁾. 앞으로 예상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신청인 박유하의 활동을 방치한다면 왜곡되고 오염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상이 한국과 일본 사회에 각인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 내에서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동시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2) 주간동아 2013. 8. 26자 기사, [인터뷰] “위안부 강제 동원 법적 책임 인신매매 업자에 먼저 물었어야 했다”

3) 한국일보 2013. 10. 6자 기사, “위안부 또 다른 시각? 일본에 면죄부 주는 줄타기 행위”

4) 동아일보 2014. 4. 13자 기사, “한일 외나무다리서 만난다…위안부 해법 양국의 선택은?”

5) 동아일보 2014. 05. 1자 기사, “20년간 못 푼 위안부문제… 제3의 길은 없는가”

점에서 도서 「제국의 위안부」의 잠재된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라. 유사한 도서 발간 가능성

피신청인들은 과거 도서 「화해를 위해서」(박유하 지음, 뿌리와이파리,
2005. 09. 27., A5, 148*210mm, 214쪽, ISBN 9788990024466)를 출판한 바
있습니다. 도서 「화해를 위해서」는 이 사건 도서 「제국의 위안부」의
기초가 된 저술로서, 역시 편향된 시각에서 서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문화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추천목록에 선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들
은 도서 「화해를 위해서」의 우수 교양도서 추천목록 등재 등의 성공을
토대로 대상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서 「제국의 위안
부」의 출판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새
로운 도서를 출판하여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일본군 「위안
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한국 사회에 만연케 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 「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요구 증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이며, 이는 UN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심지어 1993년 일본국도 고
노담화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신청인 박유하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대중을 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관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불과 몇 일전인 2014년 5월 30일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지방정부 청사로는 1호, 미주 전체로는 7호인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펼쳐진 바도 있습니다⁶⁾.

바. 접근금지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피신청인 박유하는 지속적으로 신청인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취재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국의 위안부」의 빈약한 근거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보충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피신청인 박유하는,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의 착오에 기한 증언 또는 피신청인 박유하의 의도된 질문에 이끌려 「위안부」 피해자들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증언을 진정한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으로 호도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결국 피신청인 박유하는 취재를 통해 얻은 발언들을 피해자들의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왜곡하여 사용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에게는 불리한 증거로 인용될 것이므로, 장래의 법적 불안이 도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박유하가 신청인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취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과 신청인 외

6) 연합뉴스, 2014. 5. 31자 기사 “미 수도권에 첫 위안부 기림비 제막(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취재 금지의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 소결

도서 「제국의 위안부」를 위시한 피신청인 박유하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주장은, 도서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은 진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보호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과 비교형량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비교형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의 손해가 보다 중대하고 현저한 것이므로, 「제국의 위안부」의 출판, 발생,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 등 금지의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함을 간곡히 주장합니다.

나아가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신청인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취재 금지의 가처분을 더불어 신청하는 바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2. 소갑 제1호증의 2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3. 소갑 제1호증의 3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4. 소갑 제1호증의 4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5. 소갑 제1호증의 5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6. 소갑 제1호증의 6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7. 소갑 제1호증의 7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8. 소갑 제1호증의 8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9. 소갑 제2호증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지음, 2013)'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서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2014.06.17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홍장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

1.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지음, 2013)’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서